

4.2.17 명예총장에관한규정

제정 2014. 04. 28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초당대학교 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.) 전임총장 또는 대학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자의 경륜을 학교 발전에 계속 활용하기 위하여 본교에 명예총장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자격기준과 추대절차 및 예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추대) 명예총장은 총장의 추대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승인한다.

제3조(활동) ① 명예총장은 학교발전에 관하여 총장의 자문에 응한다.

② 명예총장은 이사장과 총장이 위탁하는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.

제4조(예우) 명예총장에게는 활동에 필요한 제반편의와 각종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, 적절한 예우를 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